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2. 12 선고 2024가단4899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

변론 종결2024. 11. 14.

판결 선고2024. 12. 1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,455,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1. 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자백간주판결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이균부

별지